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16
----------	-------

발의연월일 : 2026. 9. 2.

발 의 자 : 한지아 · 김성원 · 김 건
최보윤 · 이상휘 · 배준영
조지연 · 박성훈 · 김기현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
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5(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긴급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긴급돌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과 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5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돌봄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9조의5(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긴급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긴급돌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과 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41조(위임·위탁)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41조(위임·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u>

⑤ ~ ⑦ (생략)	<u>제29조의5 제2항에 따른 긴급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 탁할 수 있다.</u>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	---